

헤어 익스텐션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54167 (2025.10.21.)
- 쟁 점 사 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인도네시아
- 최종 원산지: 중국



II 사실관계

용도	• 가발 등 헤어 장식용		
재료		중국	• 인모
		인도네시아	• 나일론 코팅 실 • 접착제 등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중국  인모 수집 및 세척, 염색, 선별 Manufacturing ▾  인도네시아  STEP 1 인모 수입 STEP 2 위프트 봉제 및 접착제 도포 STEP 3 길이 절단 STEP 4 플랫록 봉제 및 접착제 도포 STEP 5 코팅 및 마감 처리 STEP 6 포장 Export ▾  인도네시아 최종 수출		
상세 공정		중국	• 인모 수집 • 세척 및 소독 • 염색, 건조 후 중량, 색상별로 선별
		인도네시아	• 위프트 봉제 및 접착제 도포 • 길이 절단 • 플랫록 봉제 및 최종 접착제 도포 • 모발 보호 및 엉킴 방지를 위해 컨디셔닝 용액에 담가 코팅 • 다림질 및 열처리 마감 • 포장

Ⅲ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봉제 공정은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공정에 해당함

《CBP의 판정》

- ⊙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공정은 인모를 단순히 결합, 절단, 봉제하는 단순한 작업에 해당하며, 중국산 인모가 개별 정체성을 상실할 정도로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공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 ⊙ 인모가 최종제품인 헤어 익스텐션의 본질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Ⅳ 시사점

- ⊙ 가발과 같이 인모를 원재료로 하는 헤어 제품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CBP는 인모가 수집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후속 공정을 통해 염색, 세척, 선별 등의 가공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음

CBP의 판정 참고 사례

물품명	인모 제품
사례번호	NY N349850 (2025.06.30.)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인도] - 인모 수집 - 세척 작업 수행 • [중국] - 특정 색상으로 염색 - 특정 길이로 선별 및 정리 - 기타 테이프 등 부착물 부착 - 포장
판정 결과	• 인도에서 수집된 인모가 최종제품에 본질을 제공하며, 중국에서 수행된 추가 가공 이후에도 이러한 본질이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는 인도임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